

# 2025년 「서대문구 9개 대학 연합 행복캠퍼스」 지원사업 공모

「평생교육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조례」에 의거,

**2025년 「서대문구 9개 대학 연합 행복캠퍼스」 지원사업** 공모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관심있는 대학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.

2025. 2. 27.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### 1. 공모개요

#### ○ 사업추진 기본방향

- 구 및 9개 대학이 함께 지역 평생학습 진흥
- 인공지능 등 최신 트렌드 평생학습 지원
- 후속 지원 연계로 사업 성과 확장
- 평생학습 상시 플랫폼으로서 대학의 역할 확대

○ 사업기간 : 2025. 3. ~ 12. ※ 11.30. 사업종료

○ 사업대상 : 서대문구 소재 9개 대학 및 대학부설기관 등

○ 사업내용 : 대학별 특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

○ 운영규모 : 25개 프로그램 ※ 대학별 최소 1개 프로그램 이상 운영

○ 운영분야 : 12개 분야

- ☞ 재테크, 자격증, 디지털, 직업연계, 인공지능, 심리학, 건강지식, 인문학, 생활체육, 문화예술, 시민성, 기타 특화영역

○ 운영방식

- ☞ 일반 : 프로그램별 1일 ~ 6일 과정 (1일 2시간 ~ 3시간)

- ☞ 심화 : 프로그램별 10주 내외로 대학 학점 이수 연계, 자격증 취득, 취업 연계 과정 등

○ 모집인원 : 프로그램별 50명 ~ 100명 ※ 프로그램별 모집인원 조정 가능

○ 지원금액 : 총 2억원 (구비) ※ 유형별 차등 지원

- ☞ 일반 : 800만원 내외 / 심화 : 1,500만원 내외

※ 프로그램 심사 평가시 지원금액 조정될 수 있음

○ 공모기간: 2025. 2. 27.(목) ~ 3. 14.(금) [16일]

○ 접수기간: 2025. 3. 12.(수) ~ 3. 14.(금) [3일] 까지 도착분 유효

- 신청방법: [붙임2] 공모신청서 전자공문 및 한글파일 담당자 이메일 제출 (sally8849@sdm.go.kr)
- 문 의: 교육지원과 02-330-1043
- 추진절차(안)

사업계획 공고 및 학교별 신청·접수 (2025.2.~3.)	⇒	심사위원회 개최 (2025.3.)	⇒	사업별 보조금 교부 (2025.3.)	⇒	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(2025.3~11.) *11.30. 사업종료	⇒	결과보고 및 정산 (2025.12.)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	---	--	---	-------------------------

○ 작년 대비 주요 변경사항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✓ 프로그램 확대 운영 (2024년 : 20개 → 2025년 : 25개)</li> <li>✓ 프로그램 참여 후 후속지원 등 사업 성과관리 계획 포함(학습동아리 구성 등 구정참여 계획)</li> <li>✓ 프로그램 수강생 이탈 방지 방안 포함</li> <li>✓ 공모 선정심사 시 운영 규모, 해당 대학 소속 전공 교수 비율 반영</li> <li>✓ 기존 대학 운영 평생교육 프로그램 신청 제한</li> <li>✓ 사업종료 : ~ 11. 30. 限 /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: ~ 12. 31. 限</li> </ul>
---

## 2. 심사 및 선정절차

- 심사일정: 2025. 03. 21.(금) 예정
- 심사방법: 심사위원회 서류 검토, 심사점수 합산 후 고득점 순 선정  
※ 심사 과정에서 지원금액 등은 조정·변경될 수 있음
- 심사기준(안)
  - 프로그램의 합목적성과 사업계획의 적절성
  - 사업계획 대비 예산 편성의 적정성 및 구체성
  - 대학(기관)의 사업 실행 능력
  - 수혜 범위와 지역사회 파급효과
  - 프로그램의 독창성 및 창의성
- 선정 결과 발표: 서대문구청 홈페이지(고시·공고) 게재 및 개별 통보

## 3. 사업일정(안)

※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
일정	진행 절차	방법
3월 중	심사	서면심사
3월 중	최종 선정 공고/ 보조금 신청 및 교부	구청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보조금 교부신청서 등 제출
3월~11월	사업 실행	실행계획에 따라 지원 사업 진행 모니터링
12월	결과보고 및 정산	사업결과 및 정산서 제출

#### 4. 공모 신청 제한 사업

- 특정기관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, 여행 사업
- 학자금, 성금, 위로금, 생활비, 상금 등 현금성 지원 사업
- 정치적 목적 또는 종교 활동을 위한 사업
- 동일 사업 또는 유사 사업으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사업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, 「지방보조금 관리기준」(행안부 예규)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처분을 받은 단체(기관)가 운영하는 사업

#### 5. 유의사항

- 사업 담당자는 모니터링 등에 협조해주셔야 합니다.
- **자부담 편성 시 보조금과 동일하게 정산해주셔야 합니다.**
- **신청서 제출후 보조금의 20% 이상 변경시 구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.**
- 심사·선정 과정에서 선정 사업 수 및 공모 신청서 상의 보조금의 금액 등이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, 사업 수행이 부진한 경우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, 다음 연도 사업 참여 또한 제한될 수 있습니다.
- 「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,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최종 선정 후에도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## 1. 예산편성 기본원칙

-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타당하고, 적절한 수준으로 편성
- 포괄예산 편성 지향, 각 세목별로 명확한 산출 근거 제시
- 예산편성 이후 보조비목(편성목) 및 보조세목(통계목)을 신설하는 경우 또는 보조비목(편성목)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와 보조비목 등을 명시하여 각각 우리구의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함.
-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편성
  - 식비, 다과비,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

## 2.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

- 사업 추진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항목은 보조금 지출 불가
-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

### < 보조금 편성 불가 항목 >

- ◆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, 사무용 집기구입비, 사무실 임차료, 공과금,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 기본경비
- ◆ 단체 내부 임직원 강사비 및 회의 참석비, (비)상근직원 인건비
- ◆ 강사비 외 강사에게 지급되는 교통비, 사례비, 접대비, 주차비 등
- ◆ 시설비, 수선비, 시설부대비, 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
- ◆ 연구기관, 대학(교)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등 하도급, 재위탁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
- ◆ 수수료 지출, 불우이웃돕기 성금, 진료비 지급, 시상금(상품권), 장학금, 유가증권구입비 등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
- ◆ 참가자 기념품 제작·구입비, 임직원 급량비, 주차비 등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소모성 경비
- ◆ 차량유지 관리비(수리비, 보험료 등) 등
- ◆ 지방보조금 사용 불가 업종(단,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인정되어 구청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 가능함)
  - 유흥업종: ‘한국표준사업분류’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, 무도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
  - 위생업종: 이·미용실, 피부미용실, 사우나, 안마시술소, 발마사지, 스포츠마사지, 스포츠 마사지, 네일아트, 지압원 등 대인 서비스
  - 레저업종: 골프장, 골프연습장, 스크린골프장, 노래방, 사교춤, 전화방, 비디오방, 당구장, 헬스클럽, pc방, 스키장
  - 사행업종: 카지노, 복권방, 오락실
  - 기타업종: 성인용품점, 총포류 판매점

# 붙임2 항목별 지출한도액

## 1. 강사로

(단위: 천원)

등 급	대 상(전·현직)		지 급 액	
	공공분야	민간분야	기본1시간	초과시간
특 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·현직 차관(급) 이상</li> <li>전·현직 기초자치단체장 이상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대학교 총장(급), 또는 이에 준하는 학계인사</li> <li>사회적 명망과 인지도가 높은 문화·예술·종교인·기업대표(급)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400	200
전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·현직공무원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법률·경제·사회·문화·보건 등 해당 분야 5년 이상 활동경력자 및 이에 준하는 자</li> </ul>	240	120
보조강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각종 교육 운영(실기 실습 등) 보조자</li> </ul>		40	40

- 주) 1. 위 지급대상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공공분야 종사자는 「청탁금지법 시행령」 [별표2] 제2호의 적용 기준에 따라 구분  
 2.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운영 및 강사초빙의 특이한 사정 등을 감안 「청탁금지법」과 「같은 법 시행령」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원장이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하며, 이 경우 조정한 그 사례에만 적용

## 2. 강사로 외

항 목	내 용	지출한도액
대면 회의 참석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회의, 세미나, 포럼 등</li> <li>외부 전문가 참여시(단체내부자 제외)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료 100,000원, 초과 50,000원</li> <li>초과는 2시간 이상 시, 1일 1회 한</li> </ul>
온라인 회의 참석비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본료 70,000원, 초과 30,000원</li> <li>초과는 2시간 이상 시, 1일 1회 한</li> </ul>
원고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A4용지 1매 기준</li> <li>- 글씨 크기 13p</li> <li>- 줄간격 160%, 상하 여백 15, 좌우 여백 25</li> <li>머리말·꼬리말 15 또는 1면 기준 300단어</li> <li>ppt의 경우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인정 (표지, 목차, 간지 등은 제외)</li> <li>강의 위한 원고료는 강사비에 포함, 신규 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 편찬 시에만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단가: 12,000원/A4 1면</li> <li>6,000원/ppt 1면</li> <li>한도: A4 6면/강사1인에 대한 1주일(5일)</li> <li>원고료는 A4용지 최고 40매로 한</li> </ul>
재료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시장시세 적용</li> </ul>	
교재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타 견적 비교 후 선정</li> <li>교재구매 또는 인쇄비</li> </ul>	
강의실 사용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기관별 운영 기준 적용</li> </ul>	
기자재 임차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당 업체 기준에 따름</li> </ul>	
다과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개강식, 수료식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4,000원/1인, 5% 이내</li> </ul>
간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프로그램 개발 및 기획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25% 이내</li> </ul>

※ 강사비의 경우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('22.02.25.개정)

※ 기타 기관 필요 예산항목은 사업운영 내용을 근거로 적정 편성하도록 함